

「2024년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기업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동북권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도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통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는 동북권 거점 조성 및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관련 특화 지원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동북권 메타버스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동북권 메타버스 거점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
- (지원사업)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특화사업 발굴·제작지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4년 11월
- (지원내용) 콘텐츠 개발(제작) 및 전환지원, 사업화 지원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 ¹⁾	선정규모 ²⁾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① 콘텐츠 개발 및 전환지원	①-3. 신규	최대 35,000천원 내외(기업부담금 20%)	2개사 내외
	② 사업화 지원		최대 3,000천원(기업부담금 10%)	6개사 내외
목적 및 지원방향	▶ 지역특화분야(제조, 국방, 스마트팩토리) 콘텐츠를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존 XR (VR, AR, MR)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을 지원 ▶ 실증인프라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사용성 기반 콘텐츠 제작지원 ▶ 경북을 대표하는 다양한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지원대상	▶ (필수) 경북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및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유망기업 ▶ 기 제작된 XR(VR·AR·MR) 관련 콘텐츠(서비스) 제작 중인 기업 ▶ 기존 콘텐츠의 메타버스 전환 개발 유망기업			
유의사항 (콘텐츠 개발 및 전환지원)	▶ ①-3. 신규 과제는 지역특화분야 콘텐츠 개발 시 가점 부여			

^{1,2)}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경북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

○ 모집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지원사업 추진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세부사항은 지원제외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콘텐츠 개발 및 전환지원) 제작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총사업비의 60%) 및 직접비 지원
- (필수) ①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현금 출자, ②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보유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테스트 필수(5G MEC등)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사업비 조성 비율(사업비 기준, 예시)					사업기간
분야		기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협약일 ~ '24. 11.
지원금+기업부담금		지원 분야별 지원금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지원금+ 기업부담금	
(예시)					
① 콘텐츠 개발 및 전환	①-3. 신규	35,000천원	7,000천원	42,000천원	
② 사업화 지원		3,000천원	300천원	3,300천원	

○ 지원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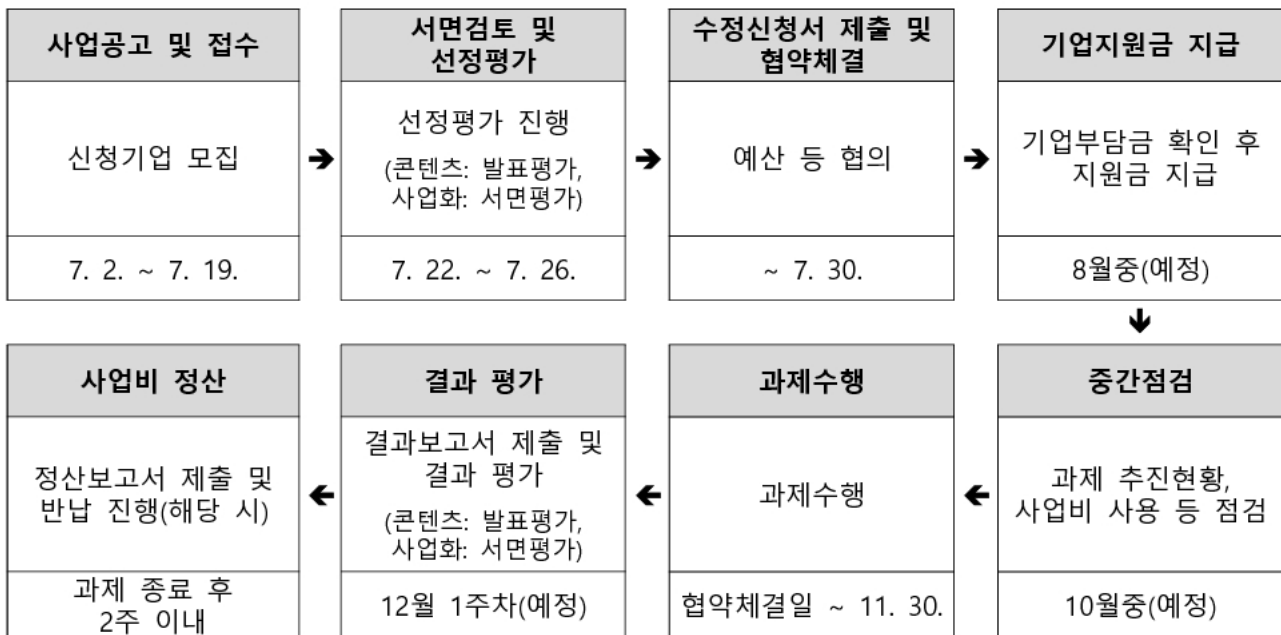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하여 구성한 집행항목 및 집행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집행(7.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 단, 사업 신청서에 사업비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시 신청서에 제출한 집행내용으로만 사업비 집행 가능(지원기업 임의로 판단하여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내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① 콘텐츠 개발(제작) 및 전환지원	메타버스 동북권 특화콘텐츠 제작·개발·전환비용	▶ VR, AR, MR, 콘솔, PC, 모바일 플랫폼 등 메타버스 콘텐츠 ▶ 경북지역특화콘텐츠(SW)의 설계, 개발, 제작 등 ▶ 콘텐츠·서비스 UX·UI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재료구입 및 장비사용(장비 구매 불가) 등 ▶ 성능검증, 데이터 분석 등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등에 필요한 시험·인증 관련 제반비용 등 ▶ 제품·서비스 개선 및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컨설팅 등 ▶ 기타 콘텐츠 제작·개선에 필요한 제반비용
	인건비 (총사업비 60% 이내)	▶ 메타버스 관련 제품·서비스 제작·개발·전환 및 개선을 위한 내부 인건비
② 사업화 지원	발굴된 콘텐츠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전시회, 컨설팅, 마케팅, 인증, 지재산 확보, 홍보물 제작 지원 ▶ 공급기업(외주 제작기업) 선정 및 제작 후 지원금 지급

① 콘텐츠 개발(제작) 및 전환지원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내부 인건비 계상 인정

② 사업화 지원 : 내부 인건비 계상 불가

○ 추진 일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및 선정

○ 평가 기준(①콘텐츠 개발(제작) 및 전환지원)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후 발표평가(100%)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평가위원회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 지원기업의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 전문성	- 기업 개발력, 협력기업 우수성 및 수출경쟁력	
참여 인력 (10점)	참여 인력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개발경력(또는 학위) 및 우수성	10
	참여 인력 참여율	- 참여 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 조달계획 현실성, 투자 여부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 목표 시장 및 과제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0
	기획 독창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20
과제 내용 (30점)	대중성(상업성)	- 실제 사업모델 및 예상 수익의 적절성	30
	경쟁력	- 진출 시장의 경쟁력 및 인지도	
합계			100

○ 평가 기준(②사업화 지원)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후 서면평가(100%)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5점)	타사대비 기술의 우수성,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	20
	메타버스 관련 제품·콘텐츠의 역량	15
시장성 (35점)	메타버스 관련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타사대비 차별성·참신성	20
	사업화 추진 역량,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우수성	15
효과성 (30점)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기업의 성과창출 역량	15
	지원기업 홍보 시 효과성	15
합계		100

○ 가산점 부여 기준

- ▶ 가산점 부여 방법 :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종평가점수에 1점 가점 부여
- ▶ 가산점 부여 항목(공통)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 가산점 부여 항목 : 지역특화분야(제조, 국방, 스마트팩토리) 콘텐츠 개발과제의 경우 가점 부여
- ▶ 가산점 부여 범위 : 최종평가점수(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3점까지 인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4. 7. 2.(화) ~ 2024. 7. 19.(금) 18:00시까지, 3주간
접수처	■ E-Mail 접수(접수증은 접수 담당자의 접수 완료 회신 E-Mail로 같음)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www.geri.re.kr) 참조 * 홈페이지 상단 → 지원분야 → 기업지원사업안내 → 동 사업공고 선택

5

접수 및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감미디어연구센터	신한재 책임	054-460-9056	hjshin@geri.re.kr

6

기타사항 및 지원제외 기준

유의사항	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허위·중복으로 판명 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지원 여부로 판단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타지역(대구 및 강원)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동일 과제(추후 기관별 지원사업 확인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동일 과제 ②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사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원칙 ④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하며 ⑦ 접수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⑧ 지원항목별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 금액은 제외됨 ⑨ 사업 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목록 확인 필수 ⑩ 세부 일정은 신청기업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⑪ 심사 및 협약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

○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지침 이외의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 지원제외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공통) 업체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여 작성, 전담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 사업비 산정 관련 규정 및 근거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 ★ 사업비 구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전문(※별첨)
-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참조
-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증빙자료 : [별표2] 정산 시 제출서류 참조

비목	세목	적용대상	집행 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u>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u>) ○ 인건비 계상 기간 : '24.8. ~ '24.11.(4개월)	계좌 이체	총사업비 60% 이내 인정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좌 이체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필수) - 정산위탁 수수료(필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table><tr><th>사업비 규모</th><th>표준수수료</th></tr><tr><td>• 5천만원 미만</td><td>600천원</td></tr><tr><t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td>800천원</td></tr><tr><td>• 1억원 이상</td><td>1,000천원</td></tr></table>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억원 이상	1,000천원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억원 이상	1,000천원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계좌 이체	총사업비 10% 이내 인정									
일반 용역비	○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결과물과 연동된 어트랙션 및 기기 제작 위탁 용역비 등	계좌 이체	총사업비 50% 이내 인정									
위탁 사업비	○ 동북권 공동콘텐츠 발굴에 필요한 참여기업의 사업비	계좌 이체	총사업비 30%이내 인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인당 3만원 이내(식대, 다과 포함)	카드/ 계좌 이체	총사업비 3% 이내 인정								